

영국의 이슬람 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이 효 원*

目 次

I. 서론	V. 영국의 이슬람금융 인식제고 및
II. 영국의 이슬람금융 도입과 현황	관련분야
III. 영국의 이슬람금융 세금정책	VI. 결론
IV. 영국의 이슬람금융 감독정책	

I. 서 론

이슬람 금융의 영역은 이슬람지역을 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GNBC방송에 따르면 비이슬람 국가들이 발행하는 이슬람 채권(수쿠크, Sukuk)의 규모는 2017년도에 들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물론 같은 기간 중동 국가에서 발행된 수쿠크의 규모와 비교하면 비이슬람 국가에서의 이슬람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할 수 있다.¹⁾ 하지만 이슬람 금

■ 투고일자 : 2017년 11월 13일, 심사일자 : 2017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자 : 2017년 12월 26일.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1) 뉴스기사, 비무슬림도 빠져든 이슬람금융의 매력...안정적 투자대안에 주목,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76215>, (검색일: 2017년 12월 22일)

융은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그 안정성을 증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오일머니의 강세에 따라 자금조달의 다각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금융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이슬람 국가에서의 이슬람 금융은 그 도입에 앞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²⁾에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의 원리에 준수하여 행하는 모든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샤리아는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생활과 일상생활 및 사회제도 모두를 규율하는 삶의 지침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도 샤리아의 영역 내에서 규율된다. 샤리아는 이자금지, 수익과 손실의 공동부담, 불확실성의 배제, 술·도박·돼지고기 등을 금지하는데, 이슬람 금융도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와 이자를 금지하는 등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서구식 금융체계와 구별된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은 전문 이슬람 법학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샤리아 위원회의 운영이 또 하나의 쟁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즉 비이슬람 국가가 전통적인 금융체계 내에서 이슬람 금융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켜 도입할 것인가에는 여러 쟁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사례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 국가 규제체계에 샤리아 이론들을 수용했을 때, 사법체계는 다양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가정들과 각기 다른 영역의 법들을 포함한 이질성(legal heterogeneity)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지고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다수의 법질서 출현은 국가 기반 규제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이집트와 같은 법 다원주의 사법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법체계 간 교차는 비효율과 법적 불안정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이러한 전제와 상당수 거리를 둔다. 영국은 이슬람 금융 산업에 다소 우호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규제 구조를 제공하는 이중 체계(dual system)를 제공하지 않고, 기존 체계에 이슬람금융을 흡수하는 방식을 취했다.³⁾

그 결과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관한 최근 보고⁴⁾에 따르면, 영국은 이슬람 금융을 제

2) 샤리아는 '사람의 길'이라는 의미의 아랍어로, 그 목표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데에 있으며, 따라서 개인 간의 관계에서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상호 권리와 책임을 강조한다. 서구사회의 법이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권리의무관계와 범죄 등의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로써 해석한다면, 샤리아는 법률의 원칙이 되는 '가치'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조; 손태우, 샤리아(이슬람법)의 법원에 관한 연구, 2013,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4권 제1호, p.145.

3) Jonathan G. Ercanbrack, The Transformation of Islamic Law In Global Financial Marke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146.

공하는 전체 124개국 가운데 22위, 비이슬람 주요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다음으로 4위를 기록했다.⁵⁾ 또한 영국 내 이슬람금융서비스는 미국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기타 서구권 국가들을 훨씬 앞서고 있다.

II. 영국의 이슬람금융 도입과 현황

1. 현황

영국의 이슬람금융은 금융에 있어 탁월한 전통을 가진 런던의 혜택을 받았다. 런던의 경우 GCC국가와 말레이시아를 이어 이슬람 금융의 세 번째로 큰 규모 시장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샤리아에 합치(sharia-compliant)하는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의 이슬람 금융 기관⁶⁾을 두고 있으며, 이들 은행의 2016년도 기준 전체 자산은 대략 45억 달러로 추산된다. 또한 영국 내 20개 이상의 일반 은행에서도 이슬람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를 개설하였을 뿐 아니라, 서구권에서

4) TheCityUK, Global Trends in Islamic Finance and the UK Market, 2017, p. 9, Source: ICD and Thomson Reuters, Islamic Finance Development Report, 2016.

5) 순위평가는 이슬람금융 교육기관, 정부의 이슬람금융 관리, 이슬람 금융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슬람금융의 인식과 관련된 부문들에서의 양적 발전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6)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Al Rayan Bank는 중심가에 5개의 지사를 운영하며 6만여명의 고객을 유치한 소매은행(retail bank)으로 영국 내 다양한 범주의 샤리아 합치 금융상품을 운영한다. The Bank of London과 The Middle East(BLME)는 독립적인 샤리아 합치 도매은행(wholesale bank)으로 런던에 위치해 있다. BLME의 경우 기업금융, 금고(treasury), 자산관리를 포함한 프라이빗 बैं킹(private banking)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Qatar Islamic Bank(QIB) UK는 QIB의 이슬람 고객과 비이슬람 고객 모두에게 샤리아 합치 금융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상품으로 무역금융, 사모펀드, 자산관리 등이 있으며 초고액자산가에서부터 국부펀드, 기관투자자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 Gatehouse Bank 또한 샤리아 합치 도매 투자은행(wholesale investment bank)으로 자본시장, 부동산, 자산금융, 금고업(treasury business), 샤리아 자문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12억달러의 부동산 자본을 관리하며, 2017년도 6월 Columbia Threadneedle과 Gatehouse는 샤리아 글로벌 주식형펀드(the Threadneedle(Lux) - Gatehouse Shariah Global Equity Fund)를 발표했다. Abu Dhabi Islamic Bank(ADIB)는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다수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ADIB UK Limited는 ADIB가 중동 이외의 지역에 설립한 유일한 지사이다. 이 외에는 The Islamic Investment Bank(IIB) European Invest Company이 현재 Rasmala 소속으로 런던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최초로 국가 수쿠크를 발행하였고 2017년도 기준 런던 주식 거래에 등재된 65개 수쿠크의 총 자산은 48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the North West와 the Midlands의 6500가구의 금융 투자 중 샤리아 합치 은행인 Gatehouse Bank의 투자금은 7억 파운드로 추산된다. 또한 영국에서의 이슬람금융은 기반시설 개발 영역에서도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The Shard, Battersea 발전소 재건, London Gateway, the Olympic Village, Chelea Barracks의 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⁷⁾

2. 도입 과정

영국 내 이슬람 금융의 역사는 오래지 않았다. 도매금융은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중동 이슬람 은행들이 영국에 자회사를 두어 시행되었고, 소매금융은 1982년에 젃다(Jeddah,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항구도시)에 기반을 둔 알바라카 투자회사(Al Baraka Investment Company)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적은 무슬림 인구수에도 영국은 2009년도까지는 유럽연합(EU) 내에서 독립형 이슬람 금융기관을 수용한 유일한 국가였다.

짧은 이슬람 금융의 역사에도 영국이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오일머니의 적극적인 유치에 있다. 2003년도 이후 급격히 상승한 오일가격은 GCC국가에서 거대 잉여 유동성자금을 발생시켰으나,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은 이 유동성자금의 성장에 맞춰 수용하기 충분하지 않았다. 이때 영국은 중동국가들과의 역사적 관계와 더불어, 런던이 혁신과 유연성에 그 전통을 둔 고도로 유동화된 시장이자 외환거래(foreign exchange)와 장외파생금융거래(over-the-counter derivatives trading)와 같은 세계의 금융의 장이라는 기반을 이용하여 중동자금을 유치하였고, 그 결과 국제 이슬람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영국정부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금융과 같은 경제 선두분야는 세계적 커뮤니케이션과 자본의 초유동성(the hyper-mobility of capital), 그리고 초국가적 기업 현상을 강조하는 세계 투자의 흐름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이슬람 금융의 도입 과정에서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영국 정부는 법적·규제적 틀을 세워 세계 금융이 부분적

7) Jonathan G. Ercanbrack, 앞의 책, p142; TheCityUK, 앞의 논문, p.3; TheCityUK, Islamic Finance Services industry Stability Report, 2017, p.7-11.

8) 영국 법체계 내에 이슬람 금융 구조를 채택하는 데에는 샤리아 준수에 우려를 표하는 반대 여론

으로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그 입법과 사법 체계에 맞추어 구체화되도록 하였다. 특히 영국 정부는 금융활동에서 평등을 원칙으로 하여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차별이 금지되었고, 이는 기존 체계 내에서 무슬림 신앙에 합치하는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강한 신호가 되었다.

이슬람 금융 산업이 특히 도매금융 시장(wholesale market)에서 국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영국 내 수요는 제한되어 있었다. 결국 2013년도에는 최대 이슬람 소매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던 HSBC의 아마나(Amanah) 금융회사가 영국 내 사업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내 무슬림의 적은 경제활동이 적은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이슬람 금융상품 선택도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일반 영국인 10명 중 9명, 소수 집단 10명 중 8명이 계좌를 개설하였지만, 영국 무슬림의 경우에는 계좌를 보유한 수는 파키스탄 출신의 3분의 2, 방글라데시 출신의 절반을 웃도는 정도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자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무슬림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⁹⁾

하지만 이슬람 금융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실무가와 자문가가 참여한 정부 자문에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중·단기적 수요가 국내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되었다. 특히, 영국이 정부 수쿠크를 발행하여 이슬람 금융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차 시장(secondary market)에 대한 기준을 설립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또한 수쿠크 발행으로 지금까지 제한되어 있던 소매금융상품의 범주를 확대할 수 있음도 전망되었다. 영국 정부는 국고로 세입이 유입되는 단기간의 ‘재무부 효과(exchequer effect)’는 다양한 양질의 이슬람 금융상품이 가져올 장기적 이익에 주목했다. 종합하면, 정부는 소매금융 시장과 도매금융 시장에서의 이슬람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번영을 예견하였고, 이로써 런던은 영국 경제 내에서 더 많은 투자, 일자리, 세입을 제공하는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었다.¹⁰⁾¹¹⁾

도 일어났었다. 그러나 금융분야는 거래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실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법 전반에서 강조되기 때문에 다문화적 수용 문제는 법문화 형성에 있어 크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국법 내에 샤리아 원칙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화·가치 중심적 논의는 금융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영국 내 이슬람 금융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법적 규제적 조치가 시행될 수 있었다

9) Jonathan G. Ercanbrack, 앞의 책, p.143-148.

10) 전통적으로 일부 무슬림 집단은 가족과 추천으로 만들어진 소수 사회 내 비공식적 신용 조합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비공식 송금 체계인 하왈라(hawalalah)는 아시아, 중동에서 관련 문서를 남기

3. 접근 방향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집중해야 할 몇 가지 한계들을 강조하는데, 첫째로는 '세금 정책', 둘째 '금융감독과 표준화'¹²⁾, 셋째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이 있다. 실제로 영국 정부의 중점은 기본적으로 세금정책 수정에 맞춰져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세금체계에 이슬람 금융구조를 수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여기서 영국정부는 아주 적은 수의 규제 정책을 두었는데, 이는 규제적 접근이 차별적 조치를 요하기 때문이다.¹³⁾

Ⅲ. 영국의 이슬람금융 세금정책

1. 세금정책의 원칙

세금정책에 관하여, 영국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법제도적 형태가 아닌 거래의 경제적 본질(the economic substance)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본질에 따른 접근이란, 이슬람 금융상품을 동종(equivalent) 이자기반 금융상품과 같은 기준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능하다면 일반 세금 제도를 따르지만,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거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촉진할 경우에는 제도를 수정하게 된다.¹⁴⁾ 이 원칙은 이슬람 금융상품들이 기존의 영국 세금 제도 내에서 경쟁력 있게 시행되는 기반이 되므로 중요하게 다뤄진다.

지 않고 신용 확인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미등록 무면허 사무실을 통한 불법적 금융 활동을 조장해왔다. 이에 대하여 영국 이슬람 소매금융의 도입은 소비자 보호와 국가 재정·통화 정책을 저해하는 불법 이슬람 금융활동을 규제적 틀 안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참조: 뉴스기사, "이슬람식 외환 거래방식 하왈라 이용 500억 원대 환치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5105.html> (검색일: 2017년 12월 22일)

11) Jonathan G. Ercanbrack, 앞의 책, p.148.

12) 법적 표준화의 경우, 유효한 샤리아 구조를 결정하는 기관을 상정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었다.

13) Jonathan G. Ercanbrack, 앞의 책, p.155.

14) 세금의 관점에서 이슬람 금융상품을 분류하면 두 가지의 수익 유형으로 나뉜다. 즉, 대안적 금융 수익과 이윤배당수익이 있다. 사실상 이자와 상당하게 '지불되거나 수취된' 액수(amounts paid or received)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이 두 유형 모두 법인세 목적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된다. 참조: Jonathan G. Ercanbrack, 앞의 책, 156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영국정부는 재무부(HM Treasury)와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Tax Technical Group)을 통하여 금융산업과 연계하여 대안적 자산금융(property financing)을 다루기 시작하였고, 그 중 이슬람 주택융자 구입 계획(Islamic home mortgage purchase plans)(HPPs)이 잘 알려져 있다.

3. 2003년 금융법(the Finance Act 2003)

2003년 7월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이슬람 당좌예금과 이슬람 주택구매 금융을 영국에 도입했다. 2003년 제정법은 이러한 주택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다룬다. 토지인지세(SDLT, stamp duty land tax)¹⁵⁾로 부동산 구매 시 다양한 비율로 지불해야 하는 토지양도세(a real estate transfer tax)와 같다. 2010년도 3월 예산안 이후에는 최대 5%가 징수되었다.

이슬람의 부동산 금융에서 근래 그 이용이 잦은 무라바하(murabahah) 계약과 무샤라카(diminishing musharakah) 계약은 최소 두 단계의 양도를 수반한다. 먼저 이슬람 금융기관(IFI, Islamic Financial Institute, 특히 은행)이 자산을 구매할 때이고, 그 다음으로 고객 구매자가 상환을 마치고 그 자산을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할 때이다. 이러한 거래에서 각각 토지인지세가 부과되고, 이로써 기존 거래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대하여 영국은 2003년 금융법(the Finance Act 2003)에서 대안적인 주택금융의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인지세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였고,¹⁶⁾ 이슬람 금융방식의 모기지인 이자라(ijarah) 방식으로 부동산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였다.¹⁷⁾ 이후 이슬람 금융기관은 무라바하(murabahah)와 타와룩(tawarruq, 이슬람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상품들은 경제적 실질에서는 이자부 대출(an interest-bearing loan)과 같은 수익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대출로 인정된다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¹⁸⁾

15) 토지인지세(SDLT)는 전체 구매 가격에 대하여 발생하고, 대출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16) Jonathan G. Ercanbrack, 앞의 책, p.156.

17) FSA, Islamic Finance in the UK: Regulation and Challenges, 2007, p.48.

18) Jonathan G. Ercanbrack, 앞의 책, p.156-157.

4. 2005년 금융법(The Financial Act 2005)

2005년 금융법(The Finance Act 2005)은 이슬람 금융거래를 '대안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규정하며 이슬람 금융기구를 기존의 영국 입법 환경에 포함하는 방향을 취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금융기구에서 '이윤(profit)'으로 표현된 사항은 이전 금융법(Finance Acts)에 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자(interest)'로 표현하였다. 이는 특히 이슬람 금융기구의 세금 처 분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2005년 금융법(The Finance Act 2005)은 은행금융(bank financing)에 주목하였는데, 특히 소비자 금융 중 이슬람 주택담보대출(Islamic mortgage)에 그 초점을 두었다.¹⁹⁾

토지인지세조항은 2005년도에 무다라바(mudarabah)와 같은 지분형 상품(equity sharing arrangements)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대안적 금융수익은 대출이자로 취급되었고, 이로써 이슬람 금융기관은 이전에는 배당 수익으로 취급되었던 무다라바 계약을 예금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그 사정을 살펴보면 이와 같다. 무다라바는 투자조합의 한 형태로, 투자 성공 시 이익 이 발생한다. 1988년 소득법인세법(ICTA, The Income and Corporations Taxes Act 1988)은 세금완화의 목적으로 위험부담 주식배당과 경제적 내용이 같은 주식발행관련 자금조달 을 부채의 형태로 위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 금융법 54항(section 54)에서 무다라바를 기존 ICTA 조항(1988 s 209(2)(e)(iii)에서 제외하여 대출 관계로 다루 었고, 세금 공제를 통하여 이러한 상품의 경쟁력을 증진시켰다. 사실상 영국 금융시장은 무다라바를 샤리아에 합치하여 운용하지 않았기에 배당금을 이자로 보는 대안적 대 출의 관계로 별도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샤라카(diminishing musharakah)에 대하여 도 토지인지세 완화가 별도 적용되었으며, 또한 샤리아에 합치하는 어린이 신탁기금도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변경되었다.²⁰⁾

5. 2007년 금융법(The Finance Act 2007)²¹⁾

2007년 금융법(The Finance Act 2007)은 2005년 금융법(The Finance Act 2005)에서 규정

19) John Dewar and Munib Hussain, The Islamic Finance and Markets Law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LTD, p.68-69.

20) Jonathan G. Ercanbrack, 앞의 책, p.157-158.

21) John Dewar and Munib Hussain, 앞의 논문, p.68-69.

된 ‘대안적 금융 투자채권(alternative finance investment bonds)’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쿠크를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후 2014년에 시작한 영국정부의 수쿠크 발행의 기반이 되었다.

6. 2010년 토지인지세 (대안적 금융 투자채권) 규정

(The Stamp Duty Land Tax (Alternative Finance Investment Bonds)

Regulation 2010)²²⁾

2010년 토지인지세 규제는 토지인지세가 대안적 금융 수익사채의 한 부분으로써 ‘임대차의 이전(a transfer of lease)’으로 적용되는 면제 규정이 타 규제조항에 따라 ‘양도(grant)’로서의 이전으로 간주되어 제한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명문을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즉 면제조항이 이자라기반 이슬람 금융 기구가 기존 금융 기구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V. 영국의 이슬람금융 감독정책

1. 2000년 금융 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FSMA)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내 금융 서비스의 규제를 다루는 법인 ‘2000년 금융 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FSMA,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은 제4장에서 영국 내에서 규제된 금융활동을 하고자 할 시에 영국 금융감독원(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허가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²³⁾ 이를 위반할 시 형사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2000년 금융 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에서 규제된 금융활동은 Order 2001(RAO,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예금 승인, 보험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 투자 조언 등이 규제된 금융활동의 예시가 되며, 법인과 조합, 개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영국 금융감독원이 허가한

22) John Dewar and Munib Hussain, 앞의 논문, p.73

23) FSA, 앞의 논문, p.10-15.

대부분의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은행 설립이다. 은행업은 RAO에서 정의한 규제된 금융 활동에 포함된다기보다, '예금 승인'의 주체로 이해되어 예금을 대출로 이용하거나 예금 자체나 예금이자를 자금으로 이용하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EU의 은행통합지침(EU Banking Consolidation Directive) 하에서 금융기관의 활동으로 분류되며, 일정한 자본 요구조건을 맞추어야 한다.

2. 2000년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FSMA) 2010년 개정(The 2010 Order)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Amendment) Order 2010

2007년 금융법 이전에 수쿠크는 일반채권이나 집합투자기구(CI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와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이는 수쿠크 발행에서 발행자의 투자가 특정 자산에서의 수쿠크 보유자에게서 받은 수익금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의 특징과 같았기 때문이다. 즉, 시장 실무자들은 수쿠크를 투자자의 요구가 아닌 샤리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만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규제기관이 개별 사안을 각각 평가해야하므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²⁴⁾

이에 The 2010 Order는 이전의 The 2001 Order를 개정하여 대안적 금융투자채권을 '특수투자(specified investments)'로 분류하고, 사채를 승인(하거나 생성하는 금융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했다. 또한 대안적 금융투자채권을 집합투자기구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신 조항(Section 77A)에 그 정의를 도입하였다. 즉, The 2010 Order는 대안적 금융투자채권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결국 이전의 다른 입법과 규제들의 결과적²⁵⁾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이슬람금융을 기존 금융기구의 하위부문으로 취급하는 영국정부의 일관된 접근법을 잘 보여준다.

아직 영국 내 이슬람 금융 기구의 지급불능에 대한 조치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없다. 따라서 영국 법원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The 2010 Order는 1986년 도산법(the

24) John Dewar and Munib Hussain, 앞의 논문, p.69.

25) FSMA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FSMA 2000 (Carrying on Regulated Activities by Way of Business) Order 2001, FSMA (Financial Promotion) Order 2005.

Insolvency Act 1986)에서의 '채권'의 정의도 폭넓게 개정하여, 수쿠크와 같은 대안적 금융 투자채권의 지급불능 상황을 기존의 채권에 비추어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²⁶⁾

3. 2012년 금융감독원법 (FSA Act 2012)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영국 내 이슬람금융을 감독하며, 영국의 모든 이슬람은행은 영국 금융감독원(FSA)로부터 허가받는다. 2012년 금융감독원 법(FSA Act 2012)는 건전성감독원(PRA,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를 잉글랜드은행(the Bank of England)의 산하기관으로 창설하여 은행, 주택금융조합, 신용협동조합, 보험자, 주요 투자회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여하였다.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와 건전성감독원은 각각 이슬람은행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담당하여 2000년 금융 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FSMA)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며, 이슬람 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과 같은 제재와 벌금이 가해진다.²⁷⁾

4. 표준화 정책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는 여러 혜택이 있다. 거래비용을 축소하여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비용을 줄이며, 부족한 샤리아 학자들의 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서류의 표준화를 통해 법적 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슬람 금융산업에 대한 확신을 강화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잠재적 이득을 염두에 두고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접근하였으나,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다.

그 원인은 샤리아 적격성여부 판단에 있다. 이슬람 금융의 표준화에 있어서 각 국가들은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샤리아 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설립하여 샤리아 적격성을 관장하도록 한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샤리아 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영국의 정부기관이 종교적 규제기관이 아니며, 엄격한 규제에 이슬람 금융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입장 하에서 영국 정부는 샤리아 해석의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이슬람 금융시장이 해결하도록

26) John Dewar and Munib Hussain, 앞의 논문, p.73-74

27) 최근 예시; 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Pages/news/2016/044.aspx# (검색일: 2017년 11월 23일)

참조: John Dewar and Munib Hussain, 앞의 논문, p.68-69

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하여 특정 샤리아 위원회의 샤리아 해석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이슬람 금융기관이 샤리아 적격성 주장의 근거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감독한다. 또한 영국정부는 국제 이슬람 금융기구들의 기준을 활용하여 표준화 문제에 접근하는데, 영국 금융감독원(FSA)는 이슬람 금융감독위원회(IFSB,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와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의 샤리아 기준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이들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샤리아 기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슬람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기준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기존 전통적 금융에 적용된 관행을 최소한 개정하여 이슬람 금융에 적용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표준화를 추구했다.²⁸⁾

V. 영국의 이슬람금융 인식제고 및 관련분야

1. 이슬람금융 인식제고

1) 교육

이슬람금융의 발전에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슬람금융의 발전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이슬람 금융상품이 샤리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샤리아 적격성 판정을 소수의 샤리아 학자들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슬람금융 관련 전문가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정부가 이슬람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슬람금융 관련단체와 협의회²⁹⁾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는 인증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증권투자연구소(CISI, Chartered Institute for Securities and Investment), 경영회계사연구소(CIMA, Chartered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이슬람은행보험연구소(IIBI, Institute of Islamic Banking and Insurance) 등이 그 예이다.

28) 강대창, 손성현, 서영경, 비이슬람국가의 이슬람 금융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KIEP, 2013, p50-51; Jonathan G. Ercanbrack, 앞의 책, p.174.

29) UKTI 2013, UK Excellence in Islamic Finance, p.14-15.

2) 공공협력

영국정부는 이슬람금융의 인식제고의 방안으로 정부기관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 산업계, 단체와 광범위하게 협력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이슬람금융의 도입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은 2001년 이슬람금융 작업반(Islamic Finance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이슬람금융 산업이 직면한 한계를 조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영국정부는 2003년도에 재무부와 국세청의 합동 조세기술 작업반(Tax Technical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이슬람금융 산업에서의 각종 이슈를 다루었고, 2003년도 금융법과 2005년도 금융법 개정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007년도와 2011년도, 2013년도에는 각각 재무부 이슬람금융 전문가그룹(HM Treasury Islamic Finance Expert Group)과 영국 이슬람금융산업협회(UKIFS), 이슬람금융태스트포스(Islamic Finance Task Force)를 조직하여 이슬람금융의 홍보와 정부기관과의 접촉 창구, 중동 국부펀드 유치 등을 추진하였다.³⁰⁾

2. 이슬람금융 관련 분야

1) 법률회사(Law Firms)

영국은 세계적으로 이슬람금융에서 필요한 전문법률지식을 제공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200개 이상의 국제법률회사가 운영 중이며, TheCityUK에 따르면 글로벌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이 중 최소 25개 법률회사가 이슬람 금융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슬람 계약의 대다수에는 영국법이 적용되는데, 이로써 전통 이슬람금융 구조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각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내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PwC, KPMG, EY, Deloitte, Grant Thornton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세금, 상장(listings), 거래, 법적준거성(regulatory compliance), 경영, IT 시스템과 관련된 이슬람금융 서비스 전문팀을 구성하여 런던에서 운영하고 있다.³¹⁾

30) 강대창, 손성현, 서영경, 위의 논문, p. 56-58; UKTI 2013, 위의 논문, p.13.

31) TheCityUK, Global Trends in Islamic Finance and the UK Market, 2017, p.15.

2) 핀테크(Fintech)

서구권 이슬람금융의 중심지이자 핀테크 선도국인 영국 내 이슬람 핀테크 산업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제공되던 기존 모기지(mortgage) 상품의 보완인 펀드 속성의 도구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슬람 금융 뉴스³²⁾(Islamic Finance News, IFN)에 따르면, 영국 기반 이슬람 부동산 크라우드펀딩플랫폼(crowdfunding platform)인 MercyCrowd는 이미 영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사무소를 열었으며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아시아 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하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예시로 Yields는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 인가 받은 최초의 샤리아 합치 핀테크 기업인데 부동산 투자를 주력으로 하며,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대출기관이 영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0파운드이다. 2018년도에는 Ummah Finance가 영국기반 최초의 이슬람 디지털은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³³⁾

VI. 결 론

2017년도 상반기 기준 '서구권 이슬람금융 산업 1위, 서구권 최초 수쿠크 발행' 등 이슬람금융 산업에서 영국은 최근 몇 년에 걸쳐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 세계 금융 중심지로써의 배경적 요인을 이러한 성장의 주요기반으로 볼 수 있지만, 이슬람금융 상품들이 런던과 영국의 다른 도시에 소개되어 제공된 지 40여년이 지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또 다른 요인을 주목할 수 있다. 바로 영국 정부의 역할이다.

이슬람금융의 잠재력의 발견한 이후 영국 정부는 이슬람금융의 도입과 발전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왔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종교와 양심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자하는 무슬림을 위한 평등 정책이자, 무엇보다도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영국 정부는 이중 법제를 두지 않고 기존의 법제에 이슬람금융을 흡수하고자 하였던

32) 뉴스기사 Islamic Finance News, Company Focus: MercyCrowd, (검색일: 2017년 11월 12일), <https://www.islamicfinancenews.com/company-focus-mercycrowd.html>

33) TheCityUK, 앞의 논문, p.15.

데, 이를 위하여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법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영국의 이슬람금융 도입과 발전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연구할 수 있다. 첫째로는 세금 정책, 둘째로는 금융감독 정책, 셋째로는 교육과 공공협력을 통한 인식제고, 마지막으로 관련 산업분야와 기술의 발전이 있다. 특히 세금 정책의 경우 이슬람 모기지에서의 이중과세 제거와 세금 감면의 확대와 수쿠크에서의 수익을 이자로 보아 수쿠크 발행을 위한 준비를 주요 정책목표로 두었고, 그 결과 런던은 수쿠크 발행과 거래에서 중심적 금융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감독 정책에서는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를 구성하여 기존 법제와의 일치라는 기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

또한 주목할 점은 도입 분야에 따라 다른 지원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세금과 금융감독 체계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기존의 체계를 최소한으로 변경하고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슬람금융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공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관련 산업분야와 기술에는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즉 영국은 정부 주도 분야와 시장 주도 분야를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산업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과정과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이다. 이슬람국가 뿐 아니라 비이슬람 국가에서도 이슬람금융의 도입과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동향을 따라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추진하고자하는 시도하였으나 이슬람금융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과 낮은 인지도로 그 도입이 무산되었다. 이슬람금융은 기존의 서구식 금융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영역에 이슬람금융이 포함된다는 것이 바로 그 차이이다. 따라서 비이슬람 국가로써 이슬람금융에 접근하기 위하여서는 문화 간, 법제 간 차이를 이해하여 국가의 기존 체계와의 관계와의 조정방식에 대한 선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대창, 손성현, 서영경, 비이슬람국가의 이슬람 금융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KIEP, 2013.

김정렬, 한국과 일본의 이슬람금융 도입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1.

손태우, 샤리아(이슬람법)의 법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4권 제1호, 2013.

FSA, Islamic Finance in the UK: Regulation and Challenges, 2007.

John Dewar and Munib Hussain, The Islamic Finance and Markets Law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LTD.

Jonathan G. Ercanbrack, The Transformation of Islamic Law In Global Financial Marke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Nicholas Jessop, The Taxation of Islamic Finance in the UK: An Introduction, Journal of Taxation of Financial Products, Vol.8 Issue.2, 2009.

TheCityUK, Global Trends in Islamic Finance and the UK Market, 2017.

TheCityUK, Islamic Finance Services industry Stability Report, 2017.

UKTI 2013, UK Excellence in Islamic Finance, 2013.

<국문초록>

이슬람 금융의 영역은 이슬람지역을 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은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그 안정성을 증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오일머니의 강세에 따라 자금조달의 다각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금융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이슬람 국가에서의 이슬람 금융은 그 도입에 앞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의 원리에 준수하여 행하는 모든 금융활동을 의미하는데, 이슬람 금융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와 이자를 금지하는 등의 샤리아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서구식 금융체계와 구별된다. 즉 비이슬람 국가가 전통적인 금융체계 내에서 이슬람 금융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켜 도입할 것인가에는 여러 쟁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사례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은 이슬람금융 산업에 다소 우호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규제 구조를 제공하는 이중 체계를 제공하지 않고, 기존 체계에 이슬람금융을 흡수하는 원칙을 취했다. 특히 영국의 이슬람금융 도입과 발전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세금 정책, 둘째로는 금융감독 정책, 셋째로는 교육과 공공협력을 통한 인식제고, 마지막으로 관련 산업분야와 기술의 발전이다. 영국은 원칙에 따라 이슬람금융의 각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조정과정을 거쳤고, 특히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주도 분야와 시장 주도 분야를 구분하였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산업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과정과 연구가 선행되었다. 그 결과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동향을 따라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추진하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한국이 비이슬람 국가로써 이슬람금융 도입에 앞서 문화 간, 법제 간 차이를 이해하여 국가의 기존 체계와의 관계와의 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국의 이슬람금융 도입에 대한 연구는 비이슬람 국가라는 점에서 적절한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이슬람금융, 영국 금융법, 토지인지세,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 영국 금융감독원법, 샤리아

<Abstract>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Islamic Financial System in UK

Lee, Hyo-Won

The realm of Islamic finance is surging exponentially over the islamic regions, and therefore many other countries are pushing to facilitate the influence of Islamic finance. The Islamic finance has proven its stability by showing two-digit growth rates even in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according to the hit of oil capital, it is estimated as an alternative finance for diversification of funding. That is why the Islamic finance is focused by the world.

Non-muslim countries need to examine Islamic finance in various points of view before its introduction. Sharia, the islamic law, is one reason of this. The Islamic finance is the finance system whose activities are compliant with the principles of Sharia. The Islamic finance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western finance in terms of its operation in Sharia, such as prohibiting interests and permitting transactions (which is based on real assets). That is, various issues should be considered by non-muslim countries when their introducing Islamic financial system into its state's regulatory system.

In this respect, the United Kingdom provides useful reference. The United Kingdom has opted to assimilate Islamic finance its regulatory system rather than to create a dual regulatory system. Especially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s of Islamic finance in the United Kindom can be divided in three; taxation, regulation, awareness through education and public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its related technology. The United Kingdom has gone through adjustments and improvements, abiding by its objectives and principles, and has divided the section for government lead and the section for market lead. In addition, at every step of the process, discussion and related studies have been preceded. And, as a result, the United Kingdom has become the hub-centre for Islamic finance.

Korea is following this world trend and tries to introduce the Islamic finance. As a

non-muslim country, before its hasty introduction, Korea also needs to precede the discussions about how to adjust Islamic financial system to its own system,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wo cultures and systems. In that sense, the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Islamic financial system in United Kingdom would be used as a proper reference.

Keywords : Islamic Finance, Finance Act, SDLT, FSMA, FSA Act, Shariah

